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종환,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서상열,
신복자,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상옥, 이성배,
이종태, 최민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최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상 스키, 카약,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세부 입법 규정은 불비(不備)한 상태임.
- 안전협의회 설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 업무에 대해 관계 행정 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000만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겠다는 “2030 리버시티, 서울” 계획에 따라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안전협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안전협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 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이하 “안전협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현행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협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 ① ----- ----- ----- ----- ----- ----- ------(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현행	개정안
<신 설>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현행	개정안
<신 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

현행	개정안
제7조 (생략)	<u>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제11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 시 의무 등)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운영 시 의무 등) ① 제11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	x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이하 안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으로 구성·운영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 안전협의회의 구체적 구성(합의제 기구), 민간위원 포함)에 관한 조항으로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함
3	제8조(안전협의회 운영 등)	○	· 안전협의회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협의회 운영 비용이 발생함
4	제9조(의견청취 등)	○	· 필요시 의견청취를 위한 전문가(민간) 자문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7조, 제8조)
- 의견청취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 (안 9조)

나. 전제

- 안전협의회 운영은 기본 회의 개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함(출장, 세미나 등 없는 것으로 전제)
- 전문가 자문은 회의 개최 시마다 1인, 1회(2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약 66,402천원(연평균 13,28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안전협의회 구성·운영비	12,534	12,400	12,534	12,400	12,534	62,402
의견청취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	800	800	800	800	800	4,000
소계(a)	13,334	13,200	13,334	13,200	13,334	66,402

- 1) 안전협의회는 최대 17명 이내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조(정의)에 따라 위원회로 의제되어 위원회 관련수당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적용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 연 12,534천원

- (위원구성) 위원수는 조례(안)에 따라 최대 17명으로 가정²⁾

(행정2부시장 1인 + 시의원 1인 + 2·4급 간부 각 1인 + 민간위원 13명)

- (위원임기) 통상적 서울시 위원회 임기를 준용하여 위원 임기는 2년 가정

- (회의주기) 분기별 1회씩 연 4회³⁾ 실시 가정

- (소요금액) 참석수당 1인 200천원⁴⁾, 업무추진경비 1인 30천원⁵⁾, 위촉장 제작비 1인 5,500원⁶⁾전제

① 참석수당 비용 = 10,400천원

= 수당단가 × 지급인원⁷⁾ × 연4회

= 200천원 × 13명 × 4회

② 업무추진 경비 = 2,040천원

= 경비단가 × 지급인원 × 연4회

= 30천원 × 17명 × 4회

③ 위촉장제작비 ≒ 94천원

= 제작비용 × 인원

= 5,500원 × 17명

○ 의견청취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 : 연 800천원

- (자문주기) 회의 개최시 관련 전문가(1인) 대상 자문 1회 실시 가정

- (소요금액) 자문수당 1인 200천원⁸⁾ x 연 자문 횟수 4회

2) 행정2부시장(조례상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미래한강본부장 및 담당과장(2·4급 공무원) +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13) 가정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6)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

7)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13명에게 지급

8) 2025년 서울시 인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자문·지도 강사 2시간 기준 200천원 지급